

# 고성군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49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04. 3. 11

제출자 : 고성군수

## 1. 개정이유

지역산업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·외 기업과 자본의 효율적인 유치와 그 지원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개정하여 투자 유치 및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코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투자유치위원회의 위원 자격변경 및 운영사항 규칙제정  
(안 제3조제3항, 제6항)
- 나. 국내·외 투자기업에 공장부지의 50% 매입 대부 규정 신설(안 제19조의1)
- 다. 조례 유효기간 삭제 : 제정조례 제1629호(99. 12. 27) 부칙에 규정된  
2003년 12월 31일까지의 유효기간 삭제(안 부칙)
- 라. 상위조례와 불부합된 조례 개정
  - 외국인투자의 지원범위를 백분율에 의한 표시로 개정(안 제8조)
  -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용보조금 지원범위를 확대(안 제13조제2항)
  - 외국인투자기업의 내국인참여한도를 완화(안 제14조제2항)
  - 외국인투자기업의 시설보조금 지원범위를 확대(안 제15조제2항)
  - 국내기업의 지원 확대(안 제19조제1항, 제2항)
  - 국내기업의 이전보조금 지원 확대(안 제 20조제3항)

## 3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외국인투자촉진법
- 예산조치 : 별도 조치 필요 없음
- 입법예고 : 2004. 1. 30 ~ 2004. 2. 18(20일간)  
-입법예고결과 : 의견내용 없음

## 4. 본문

- 붙임과 같음

## 고성군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고성군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3항중 “공무원” 을 “의회의원 및 소속 공무원” 으로 하고 동조제5항중 제4호내지 제5호를 각각 삭제하며, 동조제6항중 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” 를 “규칙으로” 로 한다.

제8조제1항중 “3분의 1” 을 “100분의 30” 으로 한다.

제1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은 새로운 공장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후 5년 이내의 외국인투자기업이 20인이상 신규로 고용하는 경우 6개월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제14조제2항중 “50명” 을 “20인” 으로 한다.

제15조제2항중 “50억원” 을 “30억원” 으로 한다.

제19조제1항중 “20억원” 을 “15억원” 으로 하고, “30명” 을 “20인” 으로 하며, 동조제2항중 “20%” 를 “30%” 로 한다.

제19조의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9조의1(공장부지의 대부 및 매각) ①군수는 초기 투자액이 50억원 이상이면서 도내에 거주하는 상시종업원이 100인 이상이거나, 원자재의 50% 이상을 도내에서 조달하는 투자기업에게 예산의

범위내에서 공장부지의 50%를 매입하여 대부할 수 있다.

②제1항에 의한 대부 및 매각에 관한 제반 사항은 고성군공유 재산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.

제20조제3항중 “1억원” 을 “2억원” 으로 한다.

조례 제1629호 고성군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 중 제정조례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부 칙

“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, 2003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” 를 “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b>제3조(투자유치위원회) ①~②(생략)</b></p> <p>③위원장은 군수가 되며, 위원은 <u>공무원과 투자유치업무에 지식과 경험이 많은 인사중에서</u>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.</p> <p>④ (생략)</p> <p>⑤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투자유치에 관한 중요시책 및 투자유치 기본계획</p> <p>2. 국내·외 투자가에 대한 지원과 관련된 사항</p> <p>3.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 지정신청 및 지원에 관한 사항</p> <p>4. 국내·외 투자가 또는 투자기업의 <u>고충사항 처리</u></p> <p>5.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민원사무의 처리</p> <p>6. 기타 투자유치업무와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</p> <p>⑥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<u>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</u></p>	<p><b>제3조(투자유치위원회) ①~②(현행과 같음)</b></p> <p>③ - - - - - <u>의회 의원 및 소속 공무원</u> - - - - -</p> <p>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⑤ - - - - -</p> <p>1. - - - - -</p> <p>2. - - - - -</p> <p>3. - - - - -</p> <p>4. <u>삭제</u></p> <p>5. <u>삭제</u></p> <p>6. - - - - -</p> <p>⑥ - - - - - <u>규칙으로</u> - - - - -</p>

현행	개정안
<p><b>제8조(외국인 투자의 지원범위)</b></p> <p>①보조금의 지원대상이 되는 외국인 투자는 당해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비율이 <u>3분의 1</u>이상이거나 외국인이 제1대주주이어야 한다.</p> <p>② (생략)</p>	<p><b>제8조(외국인 투자의 지원범위)</b></p> <p>①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<u>100분의 30</u> - - - - - - - - - - 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<p><b>제13조(고용보조금) ① (생략)</b></p> <p>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은 신규로 채용하는 상시 고용인원이 3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 초과인원 1인당 30만원을 지원하되, 사업개시 후 3년 동안 추가고용이 있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.</p> <p>③ (생략)</p>	<p><b>제13조(고용보조금) ① (현행과 같음)</b></p> <p>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은 새로운 공장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 후 5년 이내의 외국인투자기업이 20인이상 신규로 고용하는 경우 6개월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.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
<p><b>제14조(교육훈련보조금) ① (생략)</b></p> <p>②제1항의 보조금은 내국인을 50명 이상 신규로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6월의 범위안에서 1인당 월5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.</p>	<p><b>제14조(교육훈련보조금) ① (현행과 같음)</b></p> <p>② - - - - - 20인 - .</p>

현 행	개 정 안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
제15조(시설보조금) ① (생 략)	제15조(시설보조금) ① (현행과 같음)
<p>②제1항의 보조금은 <u>50억원</u> 이상의 공장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 <u>50억원</u>을 초과하는 설비금액의 2% 범위안에서 기업당 2억원까지 지원 할 수 있다.</p>	<p>② - - - - - <u>30억원</u> - - - - -  - - - - -  - - <u>30억원</u> - - - - -  - - - - - .</p>
<p>제19조(국내기업의 지원) ①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한 보조금의 지원은 투자금액이 <u>20억원</u> 이상이거나 신규로 채용하는 상시 고용규모가 <u>30명</u> 이상이어야 한다.</p>	<p>제19조(국내기업의 지원) ① - - - - -  - - - - -  - - <u>15억원</u> - - - - -  - - - - - <u>20인</u> - - - - -  - - .</p>
<p>②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공장 면적률에 의한 공장입지 기준면적의 범위안에서 분양가의 <u>20%</u> 까지 입지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. 이 경우, 보조금은 기업당 2억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,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10년이상 영위하여야 한다.</p>	<p>② - - - - -  - - - - -  - - - - -  - - <u>30%</u> - - - - -  - - .</p>

현 행	개 정 안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
<p><b>제19조의1&lt;신 설&gt;</b></p>	<p><b>제19조의1(공장부지의 대부 및 매각)</b> ①군수는 초기 투자액이 50억원 이상이면서 도내에 거주하는 상시종업원이 100인 이상이거나, 원자재의 50% 이상을 도내에서 조달하는 투자기업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장부지의 50%를 매입하여 대부할 수 있다.</p> <p>②제1항에 의한 대부 및 매각에 관한 제반 사항은 고성군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.</p>
<p><b>제20조(이전 보조금) ①~②(생 략)</b></p>	<p><b>제20조(이전 보조금) ①~② (현행과 같음)</b></p>
<p>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시설과 구분되는 본점을 관내로 이전하는 때에는 본점에 근무하는 10명을 초과하는 인원에 대하여 초과인원 1인당 30만원을 기업당 1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.</p>	<p>③ - - - - -</p> <p>- - - - - 2억원 - - - - -</p> <p>- - - - -</p>
<p><b>부 칙</b></p>	<p><b>부 칙</b></p>
<p>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, 2003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.</p>	<p>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/p>